

수원지방법원 2018. 2. 8 선고 2017가단22229 판결 [부동산압류등기말소]

전 문

원고A

피고화성시

변론 종결2018. 1. 11.

판결 선고2018. 2. 8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2. 1. 26. 접수 제9599호로, 2013. 1. 14. 접수 제5713호로 각 마친, 별지 목록 순번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2. 1. 26. 접수 제9604호로 마친 각 압류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원고과 B 등은 별지 목록 순번 2기재 부동산(이하 'C'라고 한다) 외 2필지(이하 'C 외 2필지'라고 한다) 및 화성시 D 전 1286m²(이하, '분할 전 D'라고 한다)를 공유하고 있었다.

나. 피고는 C 외 2필지 및 분할 전 D중 B 지분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 각 압류등기를 마쳐 두었다(이하 '이 사건 각 압류등기'라고 한다).

다. 원고는 C 외 2필지 및 분할 전 D를 대상으로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, 수원지방법원 2016가단8660 사건에서 C가 원고 소유로, 나머지 2필지가 다른 공유자들 소유로, 수원지방법원 2016가단8653 사건에서 분할 전 D 중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(이하 '분할 후 D'라고 한다)이 원고 소유로, 나머지가 다른 공유자들 소유로 각 분할되어 각 분할등기가 마쳐졌다.

라. 위 각 분할등기 과정에서 이 사건 각 압류등기는 C, 분할 후 D에 각 이기되었다.

[인정근거 :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~4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]

2. 주장 및 판단

가. 원고의 주장

B의 지방세 체납을 원인으로 한 압류처분에 기한 이 사건 각 압류등기는 제3자인 원고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무효이므로,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나. 판단

(1) 공유자가 갖는 권리(지분)는 공유재산 전체에 대하여 미치며 지분에 대하여 이루어진 압류의 효력 역시 그 재산 전부에 대하여 미친다 할 것이어서, 공유자 중 한 사람의 지분에 대하여 압류가 이루어진 이후 공유물이 분할되었다 하여 그 압류의 효력이 당연히 그 공유자가 공유물분할로 취득한 부동산에 집중하여 존속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공유자가 취득하는 부동산 부분에 대하여도 분할 전과 같이 미친다 할 것이다(대법원 1989. 8. 8. 선고 88다카24868 판결 등 참조).

(2)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, 이 사건 각 압류등기의 효력은 공유물분할 후에도 C, 분할 후 D 위에 B 지분의 비율대로 그대로 존속한다고 할 것이므로,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이효진

별지